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을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시행규칙”을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가목 중 “「주차장법」”을 “법”으로 하며, 같은 항 같은 호 나목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14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로, “2륜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가목 중 “「주차장법」”을 “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을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2조의3”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9조”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로, “안전표시증”을 “안전표지 중”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단서 중 “「주차장법」”을 “법”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별표1>”을 각각 “별표 1”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7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비고 제15호 본문 중 “승용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을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로 한다.

가.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자

별표 2 제2호 시설물란 중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5호 단서 중 “다만,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를 “다만,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로 한다.

별표 3 제2호 시설물란 중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6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비고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의3(주차장수급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u>별제3조</u> 및 <u>시행규칙 제1조</u>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p> <p>1. 실태조사대상</p> <p>가. 「<u>주차장법</u>」에 의한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p> <p>나. 「<u>도로교통법</u>」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u>2륜자동차</u>는 제외한다.</p> <p>2. · 3. (생략)</p> <p>4. 실태조사방법</p> <p>가. 주차시설현황조사는 「<u>주차장법</u>」에 의한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p> <p>나. (생략)</p>	<p>제1조의3(주차장수급 실태조사) ①----- --- 「<u>주차장법</u>」(이하 “법”이라 한다)----- 「<u>주차장법 시행규칙</u>」(이하 “<u>시행규칙</u>”이라 한다)----- ----- 1. ----- 가 <u>법</u>----- ----- ----- ----- ----- ----- ----- 나. 「<u>도로교통법</u>」 제2조제17호----- ----- -----<u>이륜자동차</u>----- ----- 2. · 3. (현행과 같음) 4. ----- 가. -----<u>법</u>----- ----- ----- 나. (현행과 같음)</p>

<p>② ~ ④ (생략)</p> <p>제2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기준 등) ① 법 제12조의2 및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4. (생략)</p> <p>② (생략)</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2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기준 등) ① -----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 ----- 각 호 ----- ----- 1. ~ 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② (생략)</p> <p>③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서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주차쿠폰 또는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의 주차시간의 산정은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당해 주차장의 급지 수준이 1급지, 2급지 또는 3급지인 경우에는 해당 급지의 주차요금을 4급지 또는 5급지인 경우에는 3급지의 주차요금을 부과한다.</p>	<p>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②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제4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p>	<p>제4조(주차거부 금지)----- ----- ----- 각 호의 어느 하나 ----- ----- -----</p>

(다음 페이지에 계속)

제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11조(주차요금징수방법 등) ①·②(생략)

③ 개인택시·개별용달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차량에 대한 정기권 요금은 <별표1>의 노외주차장의 월정기권란의 해당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4·5급지 주차장의 요금은 <별표1>의 노외주차장의 월정기권란의 해당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30%를 할증한 후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3조 제1항 관련)

(생략)

<비고>

1. ~ 6. (생략)
7.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등급

제11조(주차요금징수방법 등) ①·②(현행과 같음)

③ -----

별표 1-----

별표 1-----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3조 제1항 관련)

(현행과 같음)

<비고>

1. ~ 6. (현행과 같음)
7. -----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록을 한 자로서

자로서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수첩을 소지한 자

- 나.·다. (생략)
 8. ~ 14. (생략)
 15. 시장은 승용차요일제(월·화·수·목·금 중 하루 승용차를 쉬게 하는 제도) 참여차량으로서 **승용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이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해 주어야 한다. 다만,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위락시설	시설면적 67㎡당 1대
2.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육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	시설면적 100㎡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34㎡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 1대 시설면적 150㎡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자

- 나.·다. (현행과 같음)
 8. ~ 14. (현행과 같음)
 15.-----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위락시설	시설면적 67㎡당 1대
2.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육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	시설면적 100㎡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34㎡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 1대 시설면적 150㎡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로 하되,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당(오피스텔에서 호실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호실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오피스텔에서 호실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호실당) 1대 이상으로 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육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 육외수영장 :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 : 정원 100인당 1대
7.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200㎡당 1대

비고

1. ~ 4. (생략)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3조의2제2항 관련)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로 하되,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당(오피스텔에서 호실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호실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오피스텔에서 호실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호실당) 1대 이상으로 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육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 육외수영장 :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 : 정원 100인당 1대
7.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200㎡당 1대

비고

1. ~ 4. (현행과 같음)
5. -----

-----, **다만,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
-----.

[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3조의2제2항 관련)

시 설 명	최저한도	최고한도	시 설 명	최저한도	최고한도
1.위락시설	시설면적 134㎡당 1대	시설면적 112㎡당 1대	1.위락시설	시설면적 134㎡당 1대	시설면적 112㎡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	시설면적 200㎡당 1대	시설면적 167㎡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증권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	시설면적 200㎡당 1대	시설면적 167㎡당 1대
2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시설면적 500㎡당 1대 다만, 4대문안 지역내 지방자치단체청사 : 5,000㎡당 1대	시설면적 167㎡당 1대	2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시설면적 500㎡당 1대 다만, 4대문안 지역내 지방자치단체청사 : 5,000㎡당 1대	시설면적 167㎡당 1대
3.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68㎡당 1대	시설면적 223㎡당 1대	3.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68㎡당 1대	시설면적 223㎡당 1대
4.삭제			4.삭제		
4의2.삭제			4의2.삭제		
5.삭제			5.삭제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1홀당 5대, 골프연습장 : 2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 정원 30인당 1대 관람장 : 정원 200인당 1대	골프장 : 1홀당 6대, 골프연습장 : 1타석당 0.6대 옥외수영장 : 정원 25인당 1대 관람장 : 정원 167인당 1대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1홀당 5대, 골프연습장 : 2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 정원 30인당 1대 관람장 : 정원 200인당 1대	골프장 : 1홀당 6대, 골프연습장 : 1타석당 0.6대 옥외수영장 : 정원 25인당 1대 관람장 : 정원 167인당 1대
7.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400㎡당 1대	시설면적 333㎡당 1대	7.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400㎡당 1대	시설면적 333㎡당 1대

비고

1. ~ 5. (생략)
6. 설치기준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

비고

1. ~ 5. <현행과 같음>
6. -----

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0.5이상인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신 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